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4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충북문화재단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북문화재단연구원 임대료 출연 : 40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출연계획안은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다만, 매년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물 임대료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258
----------	-----

제출연월일 : 2015. 10. 2.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출연 : 40백만원

- 문화재 전문조사·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 문화재 관련 연구 활동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 수행
-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사업 및 연구서 발간
-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지방사 자료 정리를 위한 문헌조사
- 문화재 보존·활용사업 및 위탁사업
- 전통문화와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3. 제안자 의견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충청북도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
-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망함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한필수	이영환	박미경	3835

기관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자·출연대상	<input type="radio"/> 대표 : 이시종(이사장) <input type="radio"/>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 393								
출자·출연 사업비	<input type="radio"/>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00천원(도비 40,000천원) <input type="radio"/>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	2016. 1 ~ 12월	38	40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2016년 요구액은 최종 성과검토 결과액으로 기재									
출자·출연 필요성	<input type="radio"/>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input type="radio"/> 문화재 연구 학술기관 역할 수행 및 전문조사기관 기반조성								
근거법령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지도감독 부서의견 (중 평)	<input type="radio"/>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문화재 전문 학술연구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지원 타당함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산출기초 등 참고자료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15년 문화재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 평가기관 : 충청북도(경영평가단)
- 평가방법 :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실적평가 및 기관인터뷰 병행
- 평가 내용 및 결과 : 공통지표(리더십/책임경영, 경영시스템)와 개별지표(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89.95점의 “나 등급” 판정으로 양호한 성적임

○ 2014년 문화재연구원 종합 감사결과

- 감사기관 : 충청북도(감사관실)
- 분야별 지적사항

구 분	계	세입분야	예산분야	계약분야	지출분야	일반사무 분야
건 수	13	-	-	3	7	3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2, 주의 10, 개선 1),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신분상 조치 : 3명(훈계 3)

- 최근(2014년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는 없음.
- 문화재연구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출연금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재정사업평가 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연구원으로,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상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3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		38	40	40	0	2

1-②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3-279-5400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re.kr		
주요연혁	- 2005.11. 7 재단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 2010. 2.10 직제 및 기구개편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28명			25명	3명		
임원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당연직)	이○○	충청북도지사		2010. 7. 1 ~ 도지사 임기		
	비상임이사(당연직)	장○○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2014.11.19. ~ 2017.11.18		
	비상임이사	정○○	성림문화재연구원 명예원장		2005.12.19. ~ 2017.11.18		
	비상임이사	성○○	충북대학교 교수		2006. 5.30. ~ 2017.11.18		
	비상임이사	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2008.11. 8. ~ 2017.11.18		
	비상임이사	조○○	영동대학교 교수		2011.11. 4. ~ 2017.11.18		
	비상임이사	길○○	충주 박물관 학예실장		2011.11. 4. ~ 2017.11.18		
	비상임이사	엄○○	아동코칭연구소 소장		2015. 3.11 ~ 2018. 3.10		
	비상임이사	김○○	건국대학교 교수		2015. 3.11 ~ 2018. 3.10		
	비상임이사(당연직)	신○○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3. 7.12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		
	비상임감사(당연직)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2015. 8.19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임기		
비상임감사	김○○	김○○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2005.12.19. ~ 2017.12.19			
주요기능	1. 문화재 조사, 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2.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전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4,207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4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4,304
	예산액 ²⁾	4,080	4,647	3,762		부채	97
	지자체 지원액 ³⁾	0	0	0		자본 ¹⁾	4,20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02				2,943		59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4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문화재 연구 학술기관 역할 수행 및 전문조사기관 기반조성

□ 출자·출연개요

- 사업위치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설립근거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설립자산 : 2억원
- 주요기능 : 문화유산의 보존·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전문인력 양성 등

□ 산출기초

- 별지첨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200	400	300	500	0	0	0	0	0

□ 기대효과

- 충북의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권 기여
- 지속적인 문화재 연구를 통한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 우수성 홍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실있는 운영 불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기본현황

- 설립일 : 2005년 11월 7일
 - 조 직 : 원장, 조사연구실, 총무부 정원 30명 / 현원 25명
 - 이사회 : 12명[이사장(도지사), 이사 9명, 감사 2명]

□ 2015년 추진실적

- 예산규모 : 34억원
- 주요 내용
 - 매장문화재 지표 시·발굴 조사, 학술용역 : 57건
 - 학술 연구 용역 :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등 : 4건
 - 문화재 돌봄사업 : 1건(도 공모사업 유치)
- 당면 문제 : 건설경기 불황으로 2011년 이후 세입이 감소하고 있음
 - '11년 : 59억원, '12년 : 58억원, '13년 : 46억원, '14년 : 37억원, '15년 : 34억원

□ 2016년 임대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
- 면적 및 임대료 : '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세부산출내역 별첨)

임대면적 (전용)	임대료	부가세	합계
1,960.04㎡	35,096천원	3,510천원	38,606천원

※ 합계 : '16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당초 : 38,606천원 → 40,000천원 산정)

□ 임대료 지원 근거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연구원 사용료 산출내역

1. 재산개요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0

(단위 : m²)

구분	연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부 전용면적
계	2,805.63	2,378.39	427.24	1,960.04
지하	463.36	245.12	218.24	245.12
1층	806.55	597.55	209	179.20
2층	767.86	767.86		767.86
3층	767.86	767.86		767.86

2.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①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 : 2,240.95m²

☞ 지하(463.36) + 1층(241.87) + 2층(767.86) + 3층(767.86)

⇒ 지하 245.12m² + (218.24m² × 245.12m² ÷ 245.12m²) = 463.36m²

⇒ 1층 179.20m² + (209m² × 179.20m² ÷ 597.55m²) = 241.87m²

※ 대부면적 산출방식

☞ 건물전용면적 + 건물공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해당층 사용하는 총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342,640원

☞ 961,333,951원(2015년 건물시가표준액) ÷ 2,805.63(건물연면적)

㉢ 건물평가액 : 767,839,108원

☞ 2,240.95m²(건물대부면적) × 342,640원(m²당 시가표준액)

②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

☞ 지하 265.58m², 1층 205.24m², 2층 767.86m², 3층 767.86m²

$$\Rightarrow \text{지하 } 245.12 + (463.36 \times 100/70) - 463.36] \times 245.12 \div 2,378.39 = 265.58\text{m}^2$$

$$\Rightarrow \text{1 층 } 179.20 + (806.55 \times 100/70) - 806.55] \times 179.20 \div 2,378.39 = 205.24\text{m}^2$$

※ 대부면적 산출방식

☞ 부지전용면적+부지공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전체부지면적
(해당층 총연면적×100/70)-1층 총연면적]×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ext{㉞ } 2015.5.30. \text{ 기준 m}^2\text{ 당 개별공시지가} = 367,600\text{원}$$

㉞ **부지평가액 : 234,920,293원**

$$\Rightarrow \text{지하 면적}(265.58) \times \text{공시지가}(367,600) \times 1/3(\text{층별 조정계수}) = 32,542,402\text{원}$$

$$\text{1 층 면적}(205.24) \times \text{공시지가}(367,600) \times 1/2(\text{층별 조정계수}) = 37,723,112\text{원}$$

$$\text{2 층 면적}(767.86) \times \text{공시지가}(367,600) \times 1/3(\text{층별 조정계수}) = 94,088,445\text{원}$$

$$\text{3 층 면적}(767.86) \times \text{공시지가}(367,600) \times 1/4(\text{층별 조정계수}) = 70,566,334\text{원}$$

$$\text{③ 재산평가액} = \text{① 건물평가액} + \text{② 부지평가액} = 1,002,759,400\text{원}$$

3. 사용료 산출

① 사용료율 : 기본 5%

② 감면요율 : 30%(연구기관에 대하여 30% 감면)

③ **연간사용료 : 35,096,570원** ※ 부가세 3,509,650원

$$\text{☞ 재산평가액} \times \text{대부료율} \times \text{감면요율} = 996,240,930\text{원} \times 5\% \times 70\%$$